

대구예술대학교 신문방송국운영규정

(제정 2010.08.02.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개정 2024.03.25.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내언론 활동을 통하여 우리 대학교의 창학정신과 교육이념을 선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진작하고 올바른 비판정신을 함양하여 대학문화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대구예술대 신문방송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대구예술대학교 신문방송국이라 칭한다.

제3조 (소재) 신문방송국은 대구예술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 (사업) 신문방송국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대구예술대신문”의 발행
- ② 교내방송
- ③ 기타 목적에 관련되는 학술 및 문화사업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5조 (조직) 신문방송국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① 사 장 : 1명
- ② 주 간 : 1명
- ③ 운영위원 : 약간명
- ④ 간 사 : 1명
- ⑤ 신문방송국장 : 1명
- ⑥ 기 자 : 취재부, 기술부, 아나운서부, 제작부, 기획부 등의 각 부서에 부장기자, 정기자, 수습기자 약간명

제6조 (임무 및 임면) ① 사장 : 우리 대학교의 총장이 사장이 되며, 신문방송국의 사무를 통할하며, 신문방송국 임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② 주간 : 사장을 보좌하고 신문방송국의 사무를 총괄하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2024.03.25.)

③ 간사 : 주간을 보좌하고 일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신문방송국장 : 2학년을 수료한 부장급 이상의 기자중에서 선발하되 주간의 추천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신문방송국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학생기자를 대표한다.

⑤ 부장기자 : 기자급의 학생기자 중에서 주간이 임명한다.

⑥ (정)기자 : 수습기자 중에서 주간이 임명한다.

⑦ 수습기자 : 지원자중에서 공개시험을 거쳐 주간이 선발한다.

제 3 장 방송. 편집. 취재. 배부

제7조 (방송) ① 방송은 정규방송, 임시방송 및 특집방송으로 구성한다.

② 방송시간 및 프로그램의 편성은 주간이 결정한다.

제8조 (기획회의) 기획회의는 기획부에서 준비한 기획안을 심의하며, 주간, 신문방송국장, 부장기자로 구성한다

제9조 (편집회의) 편집회의는 기획회의에서 심의한 기획안에 따라 편집, 취재 활동을 논의하며, 신문방송국장, 부장기자, 기자들로 구성한다.

제10조 (취재) 심의된 기획안에 따라 취재나 청탁에 임하여야 하며, 투고된 원고 학생들에 의해 취재 혹은 청탁된 원고는 주간의 지도를 받은 후 지면 편집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쇄 및 배부) 주간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문을 인쇄하고 배부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2조 (설치) 신문방송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 한다)를 둔다.

제13조 (구성 및 회의) ① 위원회의 의장은 주간으로 하고, 위원은 주간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학생처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② 신문방송국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2회 위원회를 소집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신문제작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교내방송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기타 신문방송국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5 장 운영 및 상벌

제15조 (처우) 학생기자에 대하여는 그 활동상황과 능력에 따라 장학금과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 (원고료) 신문에 게재되는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17조 (출연료) 교내방송을 위한 출연자에게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한다.

제18조 (포상) 신문방송국에 공이 현저하고 모범이 되는 기자에게 포상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간이 총장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19조 (징계) 주간은 기자의 임기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기자는 해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
2. 근무를 태만히 하고 기자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자
3. 업무상 과실 등으로 중대한 손실을 끼친자

제 6 장 재정

제20조 (재정) 신문방송국의 재정은 교비와 기타수입으로 총당한다.

제21조 (회계) 신문방송국사의 재정지출은 주간의 품의에 의하여 사장의 결재로 행한다.

제22조 (회계년도) 신문방송국의 회계년도는 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장 보칙

제23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신문방송국 주간, 운영위원, 학생기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3.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